

accountability)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.

## 2) 감면내용 조정개요

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감면내용이 조정된 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, 이번에 개정된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은 2003.12.31까지 적용하게 된다.

- ① 농어민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 수준 존치
- ② 특정 법인·단체에 대한 감면 축소
  - 가.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감면축소
    - 취득세·등록세 50% 경감 → 25% 경감
  - 나. 농업회사법인, 영농·영어조합법인은 일반농민 수준으로 감면 축소
    -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·종합토지세 전액면제 → 50% 경감
  - 다. 한국토지공사·주택공사·수자원공사 등은 상당한 이익발생 법인이므로 감면 축소
    - 종합토지세 50% 경감 → 25% 경감
  - 라. 직업훈련시설용 부동산 감면 축소
    - 취득세·등록세 전액면제 → 50% 경감
  - 마. 장기간 감면해온 지적공사 등에 대한 과세전환
    - 지적공사에 대한 재산세·종합토지세 50%경감 → 전액 과세전환
    -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취득세·등록세 50% 경감 → 전액 과세전환
- ③ 국세(법인세)가 과세되는 영리사업에 대한 감면 축소
  -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 축소
    - 사업용 가스관의 취득세·재산세 전액면제 → 취득세 면제, 재산세 50% 경감(특별·광역시 지역은 2002년까지만 감면)
    - ※ 한국가스공사는 민영화될 때까지 전액면제
- ④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